생명의 땅 으뜸전남
Land of Life, Best Jeonnam

2020. 6. 25.(목) 11:00
보 성 다 비 치 콘 도

전라남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워크숍

전라남도
JeollaNamdo

목 차 CONTENTS

Ⅰ. 워크숍 개최계획 ····· 1

Ⅱ. 2020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 ····· 5

Ⅲ. 2020년 전라남도 재정규모 ····· 13

Ⅳ. 2020년 재정운영 방향 ····· 17

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우수활동 사례(강의 1) ····· 31

Ⅵ. 사업 우선순위 결정기준의 이해 및 실습(강의 2) ····· 43

참고자료

[참고 1] 위원회 조직도 ····· 85

[참고 2]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관련 법령 ····· 86

[참고 3]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 88

생명의 땅 으뜸전남
Land of Life, Best Jeonnam

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워크숍 개최계획

Ⅰ. 2020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워크숍 개최 계획

도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워크숍 개최 계획임

1 행 사 개 요

○ 일 시 : 2020. 6. 25.(목) 11:00 ~ 15:00

○ 장 소 : 보성 다비치콘도 일림홀

○ 참석대상 : 59명(전체위원회 위원)

○ 주요내용 : '20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설명, 오찬, 예산 교육 등

2 세부 진행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10:50 ~ 11:10 (20')	• 참석자 등록	사회 : 예산총괄팀장
11:10 ~ 11:15 (5')	• 인사말씀	기획조정실장
11:15 ~ 11:45 (30')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설명	예산총괄팀장
11:45 ~ 13:00 (75')	• 오 찬	1층 식당
13:00 ~ 13:50 (50')	• (강의1)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우수활동 사례	나라살림연구소 이왕재 부소장
13:50 ~ 14:00 (10')	• 휴 식	
14:00 ~ 14:50 (50')	• (강의2) 사업 우선순위 결정기준의 이해	나라살림연구소 이왕재 부소장
14:50 ~ 15:00 (10')	• 예산편성 설문조사 및 폐회	

생명의 땅 으뜸전남
Land of Life, Best Jeonnam

Ⅲ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Ⅱ.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예산편성 과정에 도민참여를 확대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기본계획임

1 운영개요

□ 관련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 「전라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 기본 방향

○ 예산편성의 **객관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

○ 주민생활과 밀접한 **예산 분야 및 투자우선 순위 등** 의견 수렴

○ 주민 **의견수렴 결과 공개 및 예산편성의 투명성 제고**

□ 주요 내용

○ **예산편성 전 의견수렴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 제출

○ **예산편성방향 및 분야별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제출

○ **전체사업을 대상으로 분야별 투자우선순위, 자체 투자사업을 중심으로 위원회 의견 수렴**

○ 기타 **예산편성과 관련한 의견 수렴**

- 위원들의 주민참여예산제 이해도 제고를 위한 워크숍, 교육 등 개최

2 2019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성과

□ 도민 설문조사 추진

○ 기　　간 : (1차) 2019. 5. 10. ~ 6. 28. (2차) 2019. 8. 19. ~ 8. 30.

○ 방　　법 : 도 홈페이지 공고 및 서면

○ 설문내용 : 2020년도 재정투자 우선순위 및 예산편성방향

□ 도민 제안사업 공모

○ 기　　간 : 2019. 5. ~ 6월

○ 제안자격 : 전라남도에 주소(사무소)를 두고 있는 도민

○ 대상사업 : 다수 도민에게 수혜가 되는 사업

□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 일시·장소 : 2019. 6. 17.(1차), 2019. 8. 14.(2차)·전남여성가족재단

○ 교육대상 : 도·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 예산바로쓰기감시단

○ 교육내용 : 예산·재정 기초소양, 주민참여예산제도 이해

□ 분과·전체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9. 8. 23. ~ 8. 27.(분과), 2019. 9. 10.(전체)

○ 장　　소 : 도 실국 소회의실(분과), 전남여성가족재단(전체)

○ 내　　용 : 2020년 예산편성계획 설명, 예산편성 의견수렴 등

※ 전체위원회 개최결과 : 예산반영 건의사업 21건, 336억원

□ '19년('20년 예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건의사업 반영 및 의회의결

○ 심의기간 : 2019. 9. ~ 12.

○ 예산반영 : 20건, 212억원

○ 의회의결 : 20건, 212억원

3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1 추진일정

구 분	주 요 내 용	일 정
▶ 운영 계획 수립	· 예산편성 과정 주민참여 범위 및 절차	2020. 3월
▶ 도민 제안사업 공모	· 기 간 : 2020. 3월 ~ 5월 · 대 상 : 다수 도민에게 수혜가 되는 사업 · 방 법 : 도 홈페이지, 방문 및 우편, 팩스 등	3 ~ 5월
▶ 2021년 예산편성을 위한 「설문조사」	· 방 법 : 도 홈페이지·서면 설문조사 · 내 용 : 2021년 예산편성을 위한 도민의견 수렴 및 건의사항 청취	4 ~ 6월
▶ 주민참여예산위원 워크숍 개최	· 2020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설명 ·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6월
▶ 분과위원회 회의	· 기 간 : 2020. 7월 ~ 8월 · 개 최 : 분과위원회별 개최(분과별 주관부서) · 내 용 : 도민 제안사업 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분과별 주요사업 및 예산편성방향 등에 대한 의견 수렴 ※ 실국 예산편성 요구	7 ~ 8월
▶ 운영위원회 회의	· 분과위원회에서 제출된 안건 중 전체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정리 및 사전협의	8월
▶ 전체위원회 회의	· 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제출된 안건 심의 의결	8월 말
▶ 도의회 제출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사된 예산 및 주요 재정사업 의견서 제출	11월

2 도민 제안사업 공모

【 추진절차 】

사업모집		타당성 검토		사업선정		예산편성요구
인터넷, 팩스, 우편 및 방문 등	➡	분야별 협업 (사업부서 사전검토) 사업 구체화	➡	분과위원회 심의 우선순위 심사	➡	실국 부서 예산편성요구
(3 ~ 5월)		(6월)		(7월)		(8월)

가. 제안사업 모집개요

○ 기　　간 : 2020. 3. ~ 5월

○ 신청주체 : 전남도민

※ 단, 전남도와 시·군의 공무원, 산하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

○ 대상사업 : 다수 도민에게 수혜가 되는 사업

○ 방　　법 : 도 홈페이지, 방문 및 우편, 팩스 등

나. 제안사업 심의

○ 제안사업 타당성 검토 : 2020. 6월 중

- 부적합사업 배제 : 모집기준에 부적합 사업 배제 후 소관부서 법적 검토 등
- 분과위원회 상정사업 확정

○ 분과위원회 심의 : 2020. 7월 중

- 제안신청서 및 소관부서 검토서 자료를 토대로 분과위별 검토·심의

○ 전체회의 보고 : 2020. 8월 말

- 선정사업에 대해 전체회의 상정 보고

다. 선정사업 예산요구·편성

○ 소관부서 예산편성 요구 : 2020. 8월

○ 예산부서 예산심의 및 예산안 의회제출 : 2020. 9. ~ 11월

3 도민의견 수렴

가. 설문조사 실시

○ 시　　기 : 2020. 4. ~ 6월

○ 대　　상 : 일반도민

○ 방　　법 : 온라인 및 오프라인

○ 내　　용 : 예산편성 방향 등 분야별 사업우선순위 조사

○ 결과활용 : 도 홈페이지 공개(7월), 예산편성 참고자료 활용

나. 도 홈페이지 전용게시판 및 SNS(밴드) 토론방 운영

○ 기　　간 : 연중 상시

○ 방　　법 : 홈페이지 전용게시판 및 SNS(밴드* 등) 개설·운영

*** 제4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밴드 개설(3월)**

○ 내　　용 : 위원회 활동사항 공개, 운영방안 의견수렴

4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 일시·장소 : 2020. 6월(워크숍 병행), 보성 다비치콘도

○ 교육대상 : 도 주민참여예산위원

○ 교육내용 : 예산·재정 기초소양, 주민참여예산제도 이해

5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가. 운영위원회

○ 일　　정 : 필요시

○ 구　　성 : 12명(위원장, 부위원장, 각 분과위 위원장·부위원장)

○ 기　　능 :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의견 수렴, 분과·전체위원회 운영방향 및 의견조정, 긴급사항 등 심의

나. 분과위원회

○ 일　　정 : 2020. 7월 중(도민 제안사업), 8월 중(도 주요재정사업)

○ 구　　성 : 분과별 5개 분과위원회(분과위별 10명 이상)

○ 운영주관 : 관련 실·국·본부 주무과(간사 : 주무팀장)

○ 기　　능 : **도민 제안사업** 심의 및 **주요 재정사업** 의견 제출

- (주요 재정사업) **20억원 이상 도 자체사업**과 **3억원 이상 행사·축제성 사업, 2억원 이상 도 자체 신규사업** 대상 분과위원회 의견 수렴

【 분과위원회 구성 】

분과별	기획사회	행정환경	경제관광문화	건설소방	농수산
실국별	보건복지국 여성가족정책관 인구청년정책관 기획조정실 보건환경연구원	자치행정국 도민행복소통실 동부지역본부	경제에너지국 일자리정책본부 관광문화체육국 국제협력관 기업도시담당관 한전공대설립지원단	건설교통국 도민안전실 소방본부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해양수산과학원
운영부서	사회복지과	총무과	혁신경제과	지역계획과	농업정책과
간사	복지정책팀장	총무팀장	혁신성장팀장	건설행정팀장	농정기획팀장

다. 전체회의

○ 일　　정 : 2020. 8월 말

○ 구　　성 : 전체 위원 59명(위촉직), 분과위 간사(주무팀장)

○ 기　　능

- 분과위원회별 주요 재정사업 주민의견서 발표를 통해 의견 공유
- 전체위원회 종합 토론 후 주민의결서 의결

생명의 땅 으뜸전남
Land of Life, Best Jeonnam

Ⅲ

2020년 전라남도 재정규모

Ⅲ. 2020년 전라남도 재정규모(2회추경)

총 규 모 - 9조 1,442억원(기정예산 8조 3,312억원 대비 8,130억원 9.8%증)

- 일 반 회 계 : 8조 2,796억원(기정예산 7조 4,969억원 대비 7,827억원 10.4%증)
- 특 별 회 계 : 8,646억원(기정예산 8,343억원 대비 303억원 3.6%증)

일반회계 - 8조 2,796억원

세 입		세 출	
■ 자체수입	18,996(22.9%)	■ 일반공공행정	11,314(13.7%)
		■ 공공질서 및 안전	4,191(5.1%)
· 지방세	18,220(22.0%)	■ 교육	2,486(3.0%)
· 세외수입	776(0.9%)	■ 문화 및 관광	3,460(4.2%)
		■ 환경	5,159(6.2%)
■ 이전수입	58,752(71.0%)	■ 사회복지	25,144(30.4%)
		■ 보건	1,415(1.7%)
· 교부세	11,203(13.6%)	■ 농림·해양수산	15,398(18.6%)
		■ 산업·중소기업	4,073(4.9%)
· 보조금	47,549(57.4%)	■ 교통 및 물류	3,247(3.9%)
		■ 국토 및 지역개발	3,229(3.9%)
※ 국고보조금 38,403, 균특 6,561, 기금 2,585		■ 과학기술	74(0.1%)
		■ 예비비	870(1.0%)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048(6.1%)	■ 기타	2,736(3.3%)

※ 재정자립도 : 21.4% ('20년 당초예산 24.0%, 1회 추경 23.4%)

특별회계 - 7개, 8,646억원

-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42억원
- 의료급여기금 4,830억원
- 학교용지부담금 215억원
- 물이용 부담금수질개선 1억원
-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276억원
- 광역교통시설 61억원
- 소방 3,221억원

생명의 땅 으뜸전남
Land of Life, Best Jeonnam

Ⅳ

2020년 재정운영 방향

Ⅳ. 2020년 재정운영 방향

2020년 경제여건

코로나19 여파로 대 중국수출 감소, 소비 위축 등으로 고용악화, 경기침체 가중 및 경제성장률 하락 우려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전략적·효율적 재정운용, 신속한 재정 집행 등을 통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 필요성 확대

우리 도 여건

(세입) 국세 감소에 따른 이전재원 감소, 소비위축에 따른 지방소비세 등 자체재원 감소 예상

(세출) 코로나19 관련 지역경제 회복 지원을 위한 수요 증가 예상 취약계층 보호, 일자리 창출 등 정부 역점 정책 확대 등으로 지방비 부담 가중 및 다양한 복지 요구에 따른 지출수요 지속 증가 전망

2020년도 재정운영방향

도정 주요 현안사업 및 복지비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가면서, 민선7기 도정목표를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선택과 집중의 예산운용 및 전략적인 재원 배분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등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매칭 사업비 우선 반영
- 블루이코노미, 공약사업 및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전략적 재원 배분
- 지방세수 증대와 국고지원 사업비의 최대한 확보를 위해 노력
- 자체사업 재정평가, 민간보조사업 총액한도제, 경상비 절약 등 예산절감 노력
- 농·축·수산업 육성과 경쟁력강화 지속 추진

1 재정운용 방향

가. 기본방향

○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재정투자 확대

- 일자리 창출 지원, 안심생활 지원, 저출산·고령화 대응 및 양극화 해소 지원, 주민참여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

○ 역동적·자생적 지역경제활성화 생태계 조성 기반 마련

- 자생적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 지원,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농어업 신성장 동력 확보

○ 자율성 확대와 책임의 조화로 효율성 제고 및 건전 운영

- 자율 편성·책임 조화로 효율성 제고, 세출 구조조정 및 선심성·낭비성 지출 억제, 지방세입 확충

나. 재정운용 및 예산편성방향

1 사회적 가치 제고 등 재정투자 확대

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 재정·예산 분야

○ 지방보조사업 선정 및 지역개발기금 융자 시 일자리 창출 사업 우선 배정, 기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에 예산 우선 편성 등

○ 지방재정 투자심사 시 고용유발효과 고려 및 지방채 발행을 지역 일자리 사업을 위해 중점 활용

※ 보통교부세에 자치단체별 인력확충에 따른 재정수요 반영, 자체노력 항목에 '일자리 확충노력' 지표 신설

○ 최저임금 산업범위(복리후생비, 상여금) 확대로 비공무원 근로자에게 법률 개정 취지와 다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 방안 모색

□ 지방계약·회계 및 공유재산 분야

○ 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하는 입찰자 중 신규 및 청년고용 촉진 기업 우대

○ 임금체불 등 고용질서 위반업체에 대한 계약 감점제도 적용 강화를 통한 근로자 보호

○ 공유재산을 활용한 신산업 일자리 창출 추진

- 일자리창출시설 유치를 위한 수의계약 장기대부 확대, 대부료 감면 등

※ 공장·연구시설의 지원시설과 관광·문화시설에 대해서도 20년 장기대부 허용

※ 일자리창출시설에 대해 조례로 최대 50%까지 대부료 감면할 수 있도록 완화

□ 지방세제 분야

○ 지방세 감면 시 고용창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의한 사전·사후 평가 시 고용영향평가 도입

○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창업벤처·중소기업, 혁신형 기업 등에 대한 감면 등 세제지원 확대 추진

---

② 저출산·고령화 대응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보건복지 강화

□ 저출산·고령화 관련

○ 신혼·출산가구 출산지원, 아동·양육수당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결혼·출산 지원을 위한 지자체 투자 강화

○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후소득지원, 노인일자리 확대·다양화 등 여유롭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확대

□ 양극화 해소 관련

○ 저소득층·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소득 지원을 강화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청소년 한부모가족·학대피해아동 등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

○ 긴급복지 등 취약계층 서비스 확대로 사회안전망 강화

③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지원

□ 주민 안전성 확보와 관련한 사업에 우선 지원

○ 재난 및 안전관리, 재난복구 능력 강화 등에 투자 확대

○ 위험도에 따른 효율적 점검체계를 수립하고, 재해위험지구, 노후 저수지, SOC 등 시급한 보수·보강 필요한 곳에 우선 투자

- 시설물 내진성능 보강, 위험도로 개선, 철도 노후시설 및 안전취약 시설 개량, 하천유지보수 등 시설물 안전 향상에 투자 강화

○ 소방 등 안전과 관련한 특정 목적 세수*의 증가분은 노후된 소방장비 확충 등 그 목적사업에 우선 사용

* 지역자원시설세 등 목적세는 특별회계 설치

○ 환경미화원 등 지자체 직·간접 고용인력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 강화

○ 지역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운영, 안전문화 캠페인, 안전기준 준수를 위한 교육 활성화 등 안전의식 제고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 제고

○ 취약계층의 안전사고 예방과 기후변화 및 재난·재해 등에 선제적 대응

○ 취약계층의 안전사고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 활성화

○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역할을 제고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치료 및 심리 지원 등 강화

④ 주민참여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강화

○ 읍면동 주민 대표기구(주민자치회 등) 수립 계획(자치계획 등)에 기반한 주민자치 활동 지원 강화로 공공성 및 지속성 확보

○ 지자체 여건에 맞게 주민세 환원, 주민참여예산 확대 등 주민자치 사업을 위한 다양한 이행수단 발굴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구현을 위한 현장 보건복지인력 확충 적극 추진

□ 지역 공동체 활성화

○ 자치분권·균형발전의 기반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 접점에서 활동하는 중간지원기관 설치 또는 위탁·운영

※ 공동체 활성화 조례 제정 지자체 152개, 중간지원기관은 91개 운영 중

□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

○ 지역문제 솔루션(청년실업률 감소, 미세먼지 농도 저감 등)에 투자하고 수익을 얻는 사회성과연계채권(SIB) 등 지역투자모델 개발

○ 마을기업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 및 육성 강화를 위한 예산 투자 확대

○ 사회적경제 기업이 자립할 수 있는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강화

○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기업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판매, 온·오프라인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2 자생적 지역경제

① 자생적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 위한 재정지원 등 강화

□ 자영업자 육성 지원 등을 통한 역동적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

○ 유망업종 창업자 정책자금 금리 우대 및 과밀업종 예비창업자 컨설팅 확대

○ 전통시장 내 상가 임대차 권리 보호 방안 강구

○ 고향사랑 상품권의 활성화(법적기반 마련·모바일 플랫폼 구축)를 통해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 지원

○ 야시장·골목경제 특화콘텐츠 강화 및 관광객유치 지원, 향토명품 육성을 위한 전방위(유통·판매·홍보) 지원체계 구축

○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한곳에서 비교할 수 있는 지원포털 구축, 금융·법·마케팅 등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컨설팅 기동단' 운영

○ 서민금융복지센터(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불법 사금융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높은 서민층 및 취약자 등에 대한 금융상담 서비스), 긴급 금융지원, 중금리 대출(6~7%), 햇살론 등 서민 중심의 금융지원 실시

○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소규모 시설 개선지원, 쓰레기 봉투·음식물 처리 등 공공요금 보조, 컨설팅 지원, 금리우대, 홍보 등

□ **지역경제 안정화 추진 강화 등**

○ 고용위기지역의 실직자 생활안정 및 고용유지 강화

○ 실직자들에 대체일감 사업 적극 발굴 및 직업훈련을 통한 전직 지원 강화

---

②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등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지원**

○ 신시장 개척, 유망기업 지원 확대를 통한 수출 활성화에 중점

- 유망 소비재·서비스 등 수출 유망품목에 대한 지원 강화

○ 중소기업 기술 혁신·해외시장 정보제공을 통한 경쟁력 강화

○ 특정기업에 대한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유사·중복지원사업 통폐합

□ **창업 지원 확대**

○ 창업 및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여 우수 창업자 발굴·육성을 확대하고, 사업실패 시 재창업 자금 등을 지원

○ 특허권,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등 지자체 소유 지적 재산권 사용·수익 허가 확대

□ **지방규제혁신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

○ 혁신성장을 위한 지방규제혁신 협업체계 구축·운영 지원

○ 지역별 규제샌드박스(혁신성장 실험도시) 운영을 위한 신산업 분야 시장창출, 테스트 및 시범사업 지원

○ 지역의 주요규제 이슈 해결을 위한 공론화 과정 지원

③ 농어업 신성장 동력 확보

□ 소득증대와 연계된 유통구조 혁신, 농어업의 신성장 동력화

○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 및 관광을 연계한 6차* 산업화 촉진

* 1차 산업(농수산업), 2차 산업(제조업), 3차 산업(서비스업)이 복합된 산업

○ 창업지원 확대, 정주여건 개선, 귀농·귀어·귀촌 활성화 등으로 우수인력 및 자본의 농어촌 유입 유도

○ 종자·생명산업 투자 확대 등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 산업으로 육성지역별 맞춤형 투자전략을 통한 농어촌 활력 제고

3 건전재정 운영

① 자율과 책임의 조화 속에 재정 효율성 제고

□ 중기지방재정계획 활용도 제고를 통한 효율성 및 투명성 강화

○ 자치단체의 비전과 정책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 운용의 예측가능성 제고

○ 투자효율 및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비 배분으로 예산 효율성 도모

○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기반 조성 등 정부 국정방향을 고려한 중장기 재원배분계획 수립

□ 예산편성 자율성 확대에 따른 효율성 제고 방안 강구

○ 기준경비 단가 인상 및 자율편성 권한이 대폭 확대되었으나, 이에 따른 책임성 및 효율성 제고 방안 강구 필요

- 기준 한도액이 인상된('18년) 의회관련 경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은 한도액 내에서 실제 증액편성 여부 및 대상의 범위 등을 심도 있게 검토

○ 지방재정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기준경비에서 제외된('18년) 행사축제예산 총액한도제, 월액여비는 지방자치단체별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유의

□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통한 재정의 책임성·투명성 제고

○ 예산편성의 방향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업까지 주민 참여 확대

○ 예산편성 뿐만 아니라 집행·평가 등 모든 예산과정으로 참여 확대

○ 일반 주민의 실질적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여 절차 정비

○ 예산안에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주민의견서 충실 작성

□ 지방재정 정보 공개 확대 및 서비스 기능 강화

○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를 통해 지방재정 관련 정보(자치단체·지방공기업·교육기관)를 전면 공개하고, 기초자료 개방

※ 사업별 집행내역, 계약 전과정, 행사축제,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등

- 민간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도록 원천자료를 완전 개방하고, 지자체 세입·세출 현황을 주민에게 일일 공개
- 공개 항목을 확대하고, 지역통합재정통계를 산출·공개하는 등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 지자체 주요 공공시설의 운영현황(건립비용, 수익 등)을 통합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매년 10월 공개(결산 기준)

□ 자율과 책임을 담보한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

○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운영으로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

※ 각 자치단체의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준수

□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 의무사항 등 준수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법정 전출금 적기 전출

○ 「최저임금법」 상 자치단체 근로자(무기계약, 기간제 등)의 최저임금액 이상 예산편성 등

※ 청소 용역 등 사업규모를 줄일 수 없는 예산편성 시 그간의 인건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 적정 금액 산정

② 세출 구조조정 및 선심성·낭비성 지출 억제

□ 세출 구조조정으로 지방예산 절감효과 제고

○ 경상경비 절감, 선심성·전시성 사업 폐지, 과잉투자 개선 등

-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 부진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폐지
- 신규사업은 추가적 재정부담을 유발하지 않도록 구조조정 범위 내에서 편성 추진

○ 절감재원은 일자리 창출, 복지사각지대 해소, 성장잠재력 확충, 사회적 가치 제고 등 국가 및 지역의 주요 정책사업에 투자

* 사회적약자 보호, 안전, 환경보호, 소득분배 개선,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 행사·축제 유치, 공모사업 응모 등에 대한 「지방재정영향평가」 실시

○ 중앙의뢰 투자심사 기준을 준수하고, 문화·체육시설 및 모든 청사 신축사업은 전액 자체재원 사업의 경우에도 의뢰심사 실시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닌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 실시

- BTL 사업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BTO 사업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2,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대규모사업의 타당성조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무적으로 의뢰

○ 자체심사 시 관대화 경향 방지,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한 투자심사의 엄정성·객관성 제고

○ 투자심사 이후 추진상황 관리 위해 '투자사업이력관리제' 실시

※ 500억원이상 투자사업에서 전체 중앙투자심사대상 사업으로 확대

○ 국가·공공기관의 신설·이전·확정·운영 관련 비용 부담 금지

*「지방자치법」 제122조(건전재정의 운영) 제3항 및 제4항

□ 행사·축제 효율화 및 비효율적 예산편성 지양

○ 신규 행사축제는 민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심사 및 투자심사 실시로 낭비성 행사축제 예산편성 방지

- 모든 행사·축제에 대해 매년 성과 평가, 그 결과를 익년도 예산에 반영

※ 5천만원 미만은 상대평가, 5천만원 이상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5개 등급(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으로 평가하여 미흡이하는 예산 삭감 또는 통·폐합 유도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보상금 등은 연내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 없이 소요 전액을 일괄 예산에 편성하여 보상이 지연되면 다음연도로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비효율 방지

○ 도로, 방파제 건설 등은 가급적 노선별 완결 위주로 예산을 편성

※ 무분별하게 연도별·지역별로 분산 투자(사업 쪼개기)로 인한 비효율 방지

□ 주민과 연계한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 활성화

○ 예산 낭비, 비효율 방지 등을 위한 지역주민 협력 체계 구축

○ 지자체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실적 점검 및 공개(7월, 익년도 1월)

※ 예산낭비 개선사례 성과공유, 포상 및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매년 12월)

- 자치단체 예산낭비 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강화

□ 지방보조금 예산낭비 및 부적정 수급 차단

○ 자치단체별 민간보조금의 총한도액* 범위 내에서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

* 전년도 보조금 총한도액 × (1+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증감율)
(단, 일자리와 직접 연계된 사업은 총액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

※ 총한도액 증가율은 전체예산의 증가율을 초과하지 못함

○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운영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규정을 준수

- 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보조사업 이력관리 및 사업내역 공시, 성과평가 및 일몰제 적용(3년),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 처분의 제한

○ 부정수급 적발 강화 및 적발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한 벌칙 부과 및 환수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령위반 과다 지출 등에 대한 지방교부세 감액 제도 운영

○ 지자체의 위법한 재정낭비 사례에 대한 교부세 감액 적용

※ 감사원·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외 중앙부처 보조사업 감사결과 지적사항 등 반영

○ 투자심사 미이행, 예산편성기준 위반 경비 지출, 보조금 타용도 사용 등 법령위반 과다지출 행위 집중 발굴

※ 분과위원회 사전 검토를 거쳐 「교부세 감액심의위원회」 심의·확정

③ 지방자치단체 세입 확충

□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비

○ 사전 평가(예비타당성 평가) 내실화 및 사후 심층평가 도입 등을 통한 비과세·감면 합리적 조정(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을 15% 수준 관리)

○ 대기업 대상 장기 관행화된 감면은 전면 정비하고, 취약계층·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은 확대

□ 지방세·세외수입 징수 자구노력 강화

○ 지방세 체납자 명단 통합·상시 공개 등 강화, 관허사업 제한 등

○ 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등 지방세 수준의 간접강제 운영 및 운영실적 분석·진단 운영 내실화

생명의 땅 으뜸전남
Land of Life, Best Jeonnam

V

강의 1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우수활동 사례

이 왕 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생명의 땅 으뜸전남
Land of Life, Best Jeonnam

Ⅵ

강의 2 : 사업 우선순위 결정 기준의 이해

이 왕 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참 고 자 료

▸ 참고 1
위원회 조직도 및 구성현황 | 85

▸ 참고 2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관련 법령 | 86

▸ 참고 3
전라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88

참고 1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조직도 및 구성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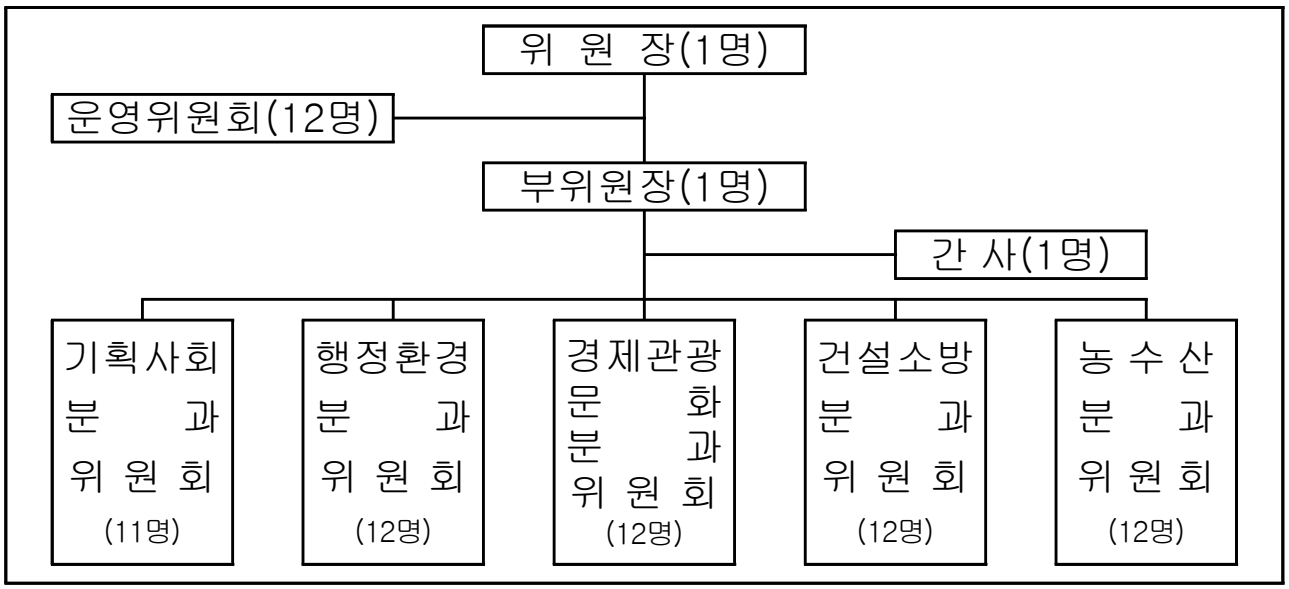

□ 임원진 명단

○ 위 원 장 : 김상옥(신안, 기획사회)

○ 부위원장 : 최옥경(화순, 행정환경)

□ 분과위원회 명단 (5개분과, 59명)

(임 기 : 2019. 8. 14. ~ 2021. 8. 13.)

구 분	기획·사회	행정·환경	경제·관광·문화	건설·소방	농·수산
계	11	12	12	12	12
위 원 장	김형민(목포)	김성계(장흥)	박석환(강진)	강대천(순천)	고경태(고흥)
부위원장	송길화(강진)	이춘봉(여수)	박정선(구례)	정수진(무안)	이정아(해남)
위 원	김의종(목포)	나은하(목포)	장호익(여수)	한주랑(나주)	유승균(목포)
	김세영(광양)	최 순(순천)	조미선(여수)	진호건(곡성)	조민아(목포)
	하현정(광양)	백영자(순천)	배순철(순천)	공태현(화순)	노기승(여수)
	채명기(담양)	나성운(나주)	이수일(나주)	조기운(화순)	장일민(나주)
	조세란(영암)	최희석(광양)	최지영(담양)	곽정용(해남)	강정훈(광양)
	김성덕(영광)	심복순(구례)	전대상(해남)	최내원(무안)	한기숙(곡성)
	곽미선(영광)	박장주(보성)	한재식(무안)	김정숙(장성)	오영호(고흥)
	이재식(진도)	박성미(보성)	박성수(무안)	김병천(장성)	강연금(장흥)
	김상옥(신안)	최옥경(화순)	임채관(완도)	변애경(진도)	허현숙(함평)
		강광범(영암)	배병민(완도)	최명곤(신안)	정영기(함평)

참고 2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법령

【 지방재정법 】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3., 2018. 3. 27.>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설 2018. 3. 27.>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2018. 3. 27.>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3., 2017. 7. 26., 2018. 3. 27.>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8. 3. 27.>

【 지방재정법시행령 】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①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이 조에서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3. 3.>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 3. 3.>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여부 및 운영의 활성화 정도
2. 예산과정에의 실질적인 주민참여 범위 및 수준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홍보 및 교육 등 지원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에 관한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3. 3.> [제목개정 2020. 3. 3.]

참고 3 전라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전라남도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 및 효율성 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견 제출자) 이 조례에서 예산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라남도(이하 "도" 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도 지역에 소재한 기관,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3. 도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 (삭제 2017. 8. 10.)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도지사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공보, 인터넷 누리집,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도지사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지방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의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9조(결과 공개)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도지사는 도 예산의 편성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3. 사업공모 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보다는 예산의 배분, 투자분야 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대학교수, 회계사 등 예산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선출직 공무원은 제외)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다만, 전라남도 지역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 단체에 한함
3.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 모집 절차에 따라 선발된 사람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위촉을 위한 선정기준과 지원일정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와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여성, 장애인, 청년, 다문화가족과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되 어느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예산편성 전 반기별 정기회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도지사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예산부서의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량비 및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분과위원회 운영 등) 도지사는 예산편성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제15조(주민참여예산 연구회) ① 도지사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개정 연구
2. 주민참여예산 역기능 해소방안 연구

3. 도의회와의 원활한 협조 방안 모색
4. 주민참여예산 평가 및 개선 방안 건의
5.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법 연구

③ 회의는 도지사가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하여 연구회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한다.

제16조(회의참석수당 등) 위원회, 연구회 등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연구회, 주민참여예산제 교육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전라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20)

제2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도지사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9.10)

1. 대학교수, 회계사 등 예산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다만, 전라남도 지역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 단체에 한함.
3.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 모집 절차에 의해 선발된 자
4. 예산편성 관계 공무원(실 국장)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각 시·군별로 고루 안배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의 요구가 있거나 사안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된다.

제7조(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전라남도 이외의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체를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8조(분과위원회 설치 등) 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두며, 각각의 직무와 소관 범위는 「전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를 따른다. 단,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실·국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획·사회 분과
2. 행정·환경 분과
3. 경제·관광·문화 분과
4. 건설·소방 분과
5. 농·수산 분과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위원은 본인의 희망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에 균형 있게 참여 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분과별 소관 직제상 주무부서 주담담당으로 한다.

⑥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견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예산안에 대한 의견 제출

제9조(운영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아래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방향 및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2. 위원장이 긴급히 결정해야 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운영위원회 심의로 부치는 사항

⑤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4조 및 제5조를 따른다.

제10조(연구회 운영 등) 도지사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방법, 지방재정 발전방안 연구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예산연구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회의참석수당 등) 위원회, 연구회 등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전라남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연구회, 주민참여 예산제 교육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MEMO

MEMO

MEMO

MEMO